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면서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준수 의무를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지난 자전거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33614호, 2023.7.3., 일부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상호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상 확대(안 제13조 별표 2)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전기자전거에만 해당하는 처분 대상을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함.

나. 지난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시행령 자체의 조항 이동에 맞추어 관련 조문 내 인용 조항 번호를 현행화하고 상위 법률(제5조제3항)에 새로운 호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해당 호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제4조제5호”를 “제5조제5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제4호”를 “법 제5조제3항제6호”로 한다.

별표 2의 위반행위란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u>제4조제5호</u> 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5조제5호</u> ----- -----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 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9. (생 략)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 조제3항제6호----- ----- -----. 1. ~ 9.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연 락 처	(044) 205 - 3547